

2019. 10. 17.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 현장검증 실시

□ 헌법재판소는 오는 10. 18.(금) 10:00 아래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1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 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 /남해군 (담당 변호사 김의환, 강지현)	전라남도 /여수시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기영조]

붙임 1 : 관련사건 개요

붙임 2 : 검증기일 진행순서

문 의	심판사무과 법원서기관 김준곤	☎ 02-708-3475
-----	-----------------	---------------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 ① 피청구인 전라남도가 2005. 2. 7.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9마일 해역 2,816ha를 2005. 2. 7.부터 2008. 2. 6.까지 3년간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자, 청구인들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해역이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 전라남도는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이 2007. 7. 26.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남방해역 6,000ha에서 2007. 7. 26.부터 2012. 7. 25.까지 5년간 연구·교습어업을 실시할 것임을, 2008. 2. 5. 다시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남방해역 13,000ha에서 2008. 2. 7.~2013. 2. 6.까지 5년간 연구·교습어업을 실시할 것임을 공고하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경상남도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공고의 취소를 요청하는 등,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남해상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검은 선으로 연결된 부분)에 해당하는 해역 내지는 [별지] 도면 표시 “G, H, I, J, K”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파란 선으로 연결된 부분)에 해당하는 해역(이하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의 자치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어 왔다.
- ② 경상남도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벗어난 해상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별지] 도면 해상에서 경상남도

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이 무엇인지가 다투어지는 등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선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내지는 [별지] 도면 표시 “G, H, I, J, K”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한 장래처분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4. 주위적으로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파란색 실선을 의미한다)의 우측(동쪽) 부분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빨간색 실선을 의미한다)의 우측(동쪽) 부분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사건의 개요

- 경상남도/남해군 v. 전라남도/여수시

- 청구취지 :

[주위적] 남해상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우측(동쪽) 부분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남해상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우측(동쪽) 부분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침해의 원인인 피청구인의 처분 :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송해역에서 장래에 행할 어업 면허 사무 등을 포함한 장래처분

3. 현장검증의 취지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국가기본도에 해상경계선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기본도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전원재판부 결정(2010헌라2)에서 선례변경을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 확정 기준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해상경계에 관한 성문법이 있으면 이에 의할 것이나, “종전에 의한다”는 지방자치법을 1948년까지 소급해 보아도 해상경계에 관한 명확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문법적 해상경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② 불문법적 해상경계는 주민들·행정청의 관행의 존재,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 법적 확신이 있으면 성립한다.

③ 불문법적 해상경계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할 것인데, 이때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그 밖에 쟁송해역의 지리적 조건(섬의 면적, 인구수, 거주현황 등),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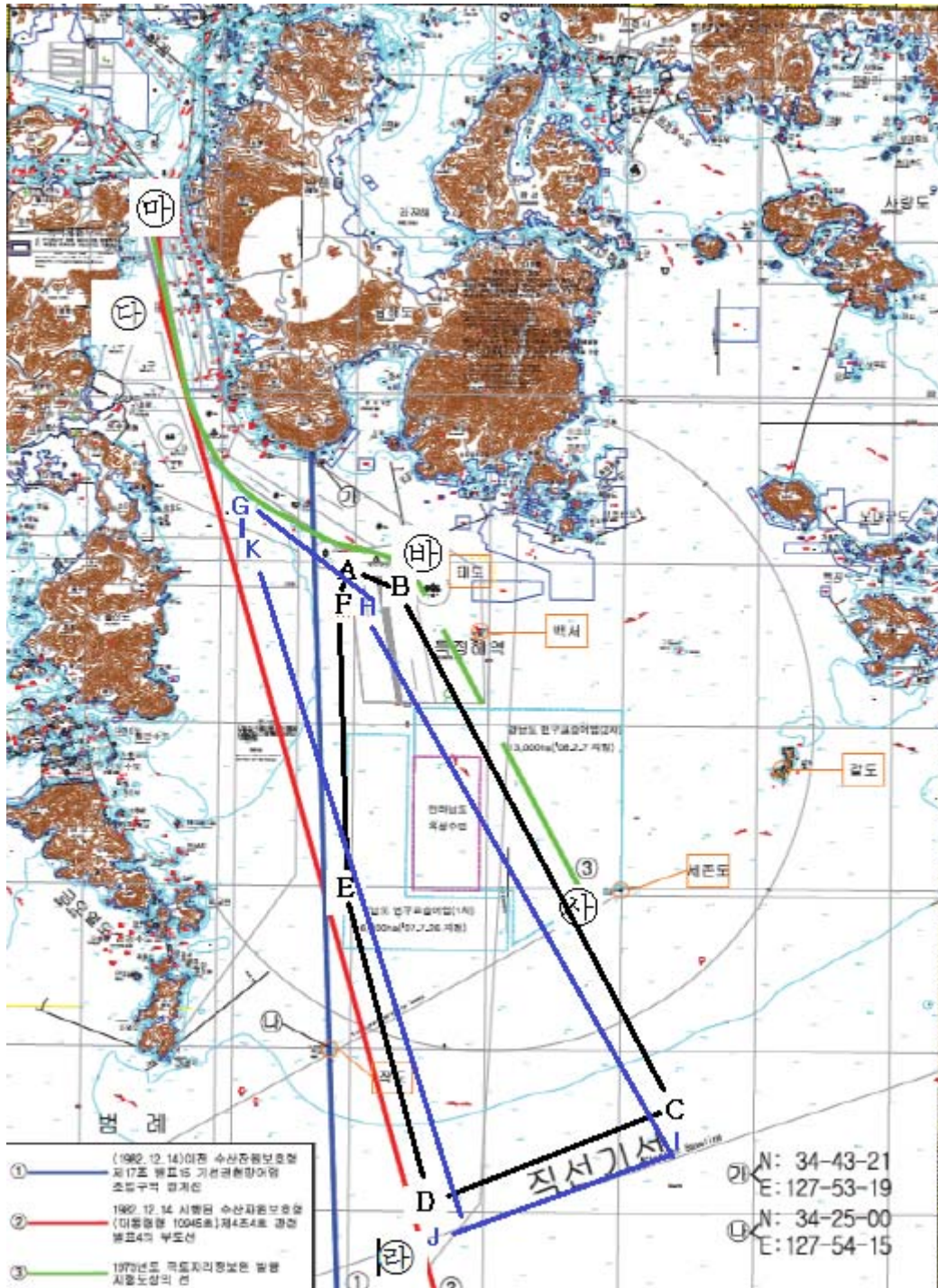
이번 현장검증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불문법적 해상경계 성립 여부와 쟁송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편익을 수명재판관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4.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쟁송해역에 관한 자치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속하는지 여부(청구인 경상남도
도와 피청구인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하여 장차 행하게 될 처분이 청구인들의 자
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별지]

도면



<붙임 2>

검증기일 진행순서

1. 개요

- 2015헌라7(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접수: 2015. 12. 24., 주심: 김기영 재판관)
- 검증시간: 2019. 10. 18. 10:00 - 15:00(5시간 예정)
- 쟁점: 청구인 경상남도와 피청구인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선

2. 수명재판관 : 김기영

참여재판관: 김기영, 이영진

3. 진행순서

- ① 남해군 미조항: 집결, 청구인 측 브리핑
- ② 현장검증 이동경로: 남해군 미조항 ⇒ 갈도 ⇒ 세존도(휴식 및 피청구인 측 브리핑) ⇒ 구 전라남도 육성수면 ⇒ 정치망어업권 10087호 ⇒ 정치망어업권 10099호 ⇒ 신월동항



- ③ 여수시 신월동항: 현장검증 종료

4. 세부검증일정

2019. 10. 18.(금)		
시 간	일 정	내용
10:00	남해군 미조항/ 현재 인원 및 소송관계자 등 집결	출석확인 검증개시
10:00~10:40	청구인 측 브리핑 및 질의응답	
10:40	승선	전남202호 어업지도선
10:40~11:10 (30분 소요)	갈도로 이동	이동(배편)
11:10~11:20	갈도 현장검증(제1포인트) 및 청구인 의견 청취	현장검증 실시
11:20~11:40 (20분 소요)	세존도로 이동	이동(배편)
11:40~11:50	세존도 현장검증(제2포인트) 및 청구인 의견 청취	현장검증 실시
11:50~12:20	휴식	선박내 휴식(간식)
12:20~13:00	피청구인 측 브리핑 및 질의응답	선박 내
13:00~13:05 (5분 소요)	육성수면으로 이동	
13:05~13:20	육성수면 현장검증(제3포인트) 및 <u>쌍방</u> 의견 청취	현장검증 실시
13:20~13:55 (35분 소요)	정치망어업권 10087호로 이동	
13:55~14:05	정치망어업권 10087호 현장검증(제4포인트) 및 피청구인 의견 청취	현장검증 실시
14:05~14:10 (5분 소요)	정치망어업권 10099호로 이동	
14:10~14:20	정치망어업권 10099호 현장검증(제5포인트) 및 피청구인 의견 청취	현장검증 실시
14:20~15:00 (40분 소요)	신월동항으로 이동	
15:00	하선 및 마무리발언, 검증종료	